

2024년 J-curve 배치프로그램 1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(예비)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[J-curve 배치프로그램 1기]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2월 7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I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-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(예비)창업자를 발굴하여 단기 집중육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역량있는 기업으로 육성

□ 주요내용

- 모집기간 : 2024. 2. 7.(수) ~ 2. 20.(화) 18:00
- 모집대상
 - 예비창업자(팀) ~ 3년 이내 창업기업('21. 1. 1. 이후)
 - *예비창업자
 - 창업 시 전북지역 내 사업장 주소지를 예정 중인 자
 - 사업기간(24년 12월) 내 창업 필수 조건
 - *3년 이내 창업기업: 전북지역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기업
 - 센터 관리기업*의 경우 도외소재 기업 신청가능(단, 사업기간 내 전북이전 조건)
 - *센터 관리기업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
- 선정규모 : 8개사 내외
- 운영기간 : 24년 3월 ~ 7월
 - * 상황에 따라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○ 지원내용

- 기업진단 프로그램, 진단에 따른 분야별 맞춤형 교육·멘토링 지원
- 투자자/심사역 1:1 매칭 지원, 투자 및 TIPS 연계 지원 등
- 기초 IR컨설팅 지원, 우수기업 IR자료 제작 지원
- 해외 유망 AC, VC 연계 POC 등 후속 성장 육성사업 지원(미국-스타트업정키, 베트남-VSV Capital, 인도-The Circle FC)
-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실(Start-up Foret) 활용 입주공간 지원

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(신청대상과 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함)

○ 신청대상 *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

- 예비창업자(팀) ~ 3년 이내 창업기업('21. 1. 1. 이후)

*예비창업자

- 창업 시 전북지역 內 사업장 주소지를 예정 중인 자
- 사업기간(24년 12월) 내 창업 필수 조건

*3년 이내 창업기업: 전북지역 內 사업장 주소지를 둔 기업

- 센터 관리기업*의 경우 도외소재 기업 신청가능(단, 사업기간 내 전북이전 조건)

*센터 관리기업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

■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

구분	확인 서류 및 기준
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
법인기업	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

*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,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,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(최종 선정자에 한함)

○ 사업장 소재지 *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

①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기업

* 본사(타지), 지사(도내)인 경우, 본사와 지사의 사업자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
② 타 지역(전북 소재 외) 기업은 선정 후 사업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의 도내 이전 예정 기업

□ 신청제외 기업

-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- 기 선정 되어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 및 중단 처분자(기업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(개인, 법인)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(기업) ※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가상화폐거래소이거나 이를 운영하는 기업
-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Ⅲ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-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
 - 전문가 심층 진단을 통한 기업 현황파악 및 성장전략 방안 수립을 위한 기업 진단 프로그램 지원
 - 경영·투자·IR 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창업교육 및 전문 멘토링 지원
 - 네트워킹 운영(사업설명회, 교류회, 연사 강연 등)
 - 센터 운영사업 연계 지원(판로, 투자, 마케팅, R&D 사업 등)
 -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투자자/심사역 간 1:1 매칭을 통한 단계별(교육→진단→컨설팅→고도화) 전문가 솔루션 제공
 - 스타트업 캠프(Start-up Camp) 운영

○ 투자 연계 지원

- 데모데이를 통한 IR피칭 기회 제공
- 데모데이 종합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IR자료 제작지원
- TIPS 연계 지원(센터 협력 TIPS운영사를 연계하여 TIPS 추천 검토)
- 우수기업 Seed투자 및 투자연계형 보증프로그램 검토
- 해외 유망 AC, VC 연계 POC 등 후속 성장 육성사업 지원(미국-스타트업 정기, 베트남-VSV Capital, 인도-The Circle FC)

○ 입주공간 지원

-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실(Start-up Foret) 오픈스페이스 입주 공간 지원
- ※ 지원항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

IV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4. 2. 7.(수) ~ 2. 20.(화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플랫폼 접수(<http://event.jbci.or.kr>)
 - 사업신청 : 공고문, 신청서 다운로드
 -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

< 온라인 신청절차 >

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→ ② '사업신청' 메뉴 선택 → ③ **J-curve 배치프로그램** '신청하기' 선택 → ④ 기본정보 입력(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) → ⑤ **신청서 업로드(용량제한 30MB 유의, 파일형식 PDF)** → ⑥ '온라인 접수' 제출 → ⑦ '신청-접수확인' 메뉴 선택 → ⑧ 신청정보 (신청사업명, 이름, 휴대전화, 비밀번호) 입력 → ⑨ '접수현황확인'

※ **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접수 마감시간 이후 '온라인 신청 플랫폼' 추가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접수결과 신청기업의 수가 미달일 경우, 접수기간 연장 및 추후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- 문의처 : 미래전략본부 액셀러레이팅팀 (063-220-8951)

- 제출서류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
구분	제출서류		필수여부	비고	
1	■ 참가신청서		필수	-	
2	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		-	
구분	증빙서류		필수여부	비고	
1	■ 대표자 신분증		필수	-	
2	■ 개인	사업자등록증(계속 사업 모두)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폐업증명원(폐업 이력 있을 시)		필수	-
	■ 법인	사업자등록증(계속 사업 모두), 법인등기부등본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폐업사실증명(폐업 이력 있을 시)			
3	■ 국세(완납증명서), 지방세 완납 증명서				-
4	■ 대면심사 시 발표자료(10분 정도 분량)				
5	■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		해당시	2023년	
6	■ 실적자료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		해당시	2023년	
7	■ 기타자료(지식재산권, 벤처기업확인서 등)		해당시	2023년	

* 예비창업자의 경우 '예비창업자'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사실증명, 사업자등록증명, 폐업사실증명,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제출

- *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처 : (방문)세무서 또는 (인터넷)홈택스에서 발급 가능
- *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처 : (방문)주민센터, (인터넷)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
- * 사실증명 발급절차 : 국세청(홈택스)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기창업자 : 총사업자등록내역/예비창업자 : 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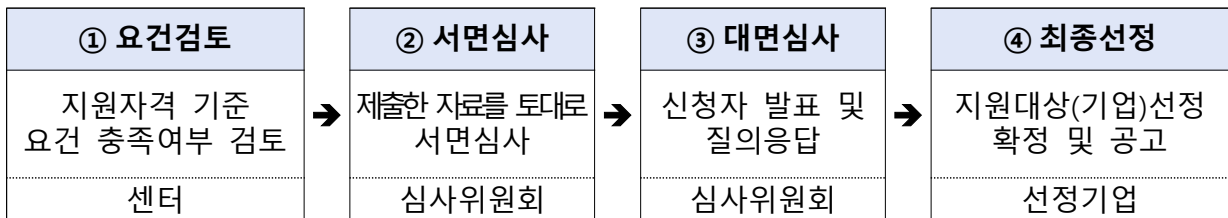
○ 실적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 증빙서류(해당시)

매출	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
수출	수출실적 증명원(한국무역협회 발급), 수출계약서등
투자	투자계약서(투자금액 포함)
고용	4대보험 가입자 명부
기타자료	국내·외 지식재산권, 국제협약서, 벤처기업확인서 등 기타 증빙자료

V 심사 및 추진일정

□ 심사방법 및 절차

< 심사 및 일정 >



- ① (요건검토)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② (서면심사)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심사 및 발표심사 대상자 확정
- ③ (대면심사)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(예비)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- ④ (최종선정) 발표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

□ 심사항목

심사항목	내 용	점수
경영	- 기업 대표 및 팀원의 전문성 - 추진역량 및 제품(서비스) 이해도 -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	40
기술	- 지식재산권 및 인증 확보 건수 - 보유 기술을 활용한 제품 구현계획 -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	30
사업화	- 시장분석 및 판매계획의 타당성 - 목표시장 진입 및 확장 가능성 -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	30
합계		100

※ 세부심사항목은 변동될 수 있음

○ 최종선정 :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(기업) 선정 및 협약체결

※ 선정기업수는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추진절차 및 일정 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VI 기타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(24. 2. 20.(화) 18:00)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서류심사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대면 심사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대면심사는 (예비)창업자 혹은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심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참고 1

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(기창업자 해당, 공고일 기준)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폐업 3년 까지			창업아님	
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		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창업아님	
		동종의 신규 법인설립	창 업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동종창업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	
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	
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이면서 최대주주	창업아님		
조직변경	동종유지	창업아님		
	이종	창 업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영 시행(2020.10.8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참고 2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1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